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중“관서당경비”를“일상경비”로 하고, 동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은 이를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 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

제28조의 제목“(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를“(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물품검사조서에 의하여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를“물품검사조서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1의 품종구분 기준란중 (1)비품 ②를“내용년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3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하고, 같은표 같은란중 (2)소모품 ④를“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0만원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276호
- 다. 제출일자 : 1999년 5월 20일
- 라. 회부일자 : 1999년 5월 24일

2. 제안이유

은닉재산 신고절차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의 구비서류 요구사항을 생략하여 신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재산 사용시의 자치법규 상호간 중복되는 허가조건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은닉재산 신고시 신고와 관련된 각종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

급시 인감증명서와 각서제출의무를 폐지함.(안 제6조)

-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당해재산의 사용에 대한 일률적이고 불합리한 의무적 조건부여 사항을 폐지함.(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88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지방재정법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1.15)

1. 보상금액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20 상당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상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100만원으로 한다.

2.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신고인은 은닉재산 신고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인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형편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 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 1. 사용목적
- 2. 사용기간
- 3. 사용료
- 4. 사용료 납부방법
- 5. 손해보험증서 제출

- 6.사용허가 표지 부착
- 7.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 8.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은닉재산 신고절차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생략하고,
-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 일률적이고 불합리한 허가조건 등 규제부분을 정비·보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려는 것임.

나. 개정 조문별 검토결과

먼저 안 제6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20 상당금액으로 하고 최고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신고인이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에는 일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토록 하는 한편,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에는 인감증명과 각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부분은 신고인으로 하여금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제2항 및 제3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이 시장에게 은닉재산신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하면서 관련 규칙 제11조의 별첨 신고서식(1)에서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은닉재산의 점유자 인적사항, 발견경유, 관리상태, 시유재산 증명서류,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각종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고의 번잡성으로 인하여 신고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각종 확인사항은 신고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접수후 담당공무원이 즉시 확인하여 처리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14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 안 제14조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등 행정

재산을 사용토록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 8개항으로 된 사용허가조건을 모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 본 허가조건은 관련 조례시행규칙 제27조의 별지 제11호서식에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중복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부분을 조례에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비하려는 조례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 직접 관련이 많은 시행규칙도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피부에 와 닿는 규제완화가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끝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채택된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99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토서

1. 제안경위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304호
- 다. 제출일자 : 1999년 5월 24일
- 라. 회부일자 : 1999년 5월 25일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99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키 위한 것임.

3. 주요골자

주택조합내 토지를 주택조합에 매각하며, 유수지를 자치구에 양여하고, 상호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철도청과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 별첨)

- 취득 1건 -토지 : 1필지 3,666.4㎡(1,109.0평)
- 처분 3건
  - 토지 : 39필지 157,375.4㎡ (47,605.8평)
  - 건물 : 2동 2,234.2㎡(675.8평)

4. 관리계획변경 재산현황

가. 매각대상 재산

재산내역

(다음 페이지에 계속)